
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. 13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. 1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1. 1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경선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(안 제명)
(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⇒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)
- 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 용어개정(안 제1조 내지 제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71호
의결년월일	2000. 1. 21 (제76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. 1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(안 제명)
(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⇒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)
- 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 용어개정(안 제1조 내지 제7조)
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중 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”을 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”으로 하고 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 한다.

제2조 내지 제7조 중 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	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<u>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…… <u>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</u> 의…………… <u>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</u> ……………
제2조(구성) ①(생략)	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
3.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(각 상임위원회별 1인)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④(생략)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5.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민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민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3.
.....민간투자사업에.....
.....

④(현행과 같음)

- 제4조(기능)
1. 민간투자사업과.....
 2. 민간투자시설사업.....
 3.
 4.
 5.민간투자사업의.....

제7조(간사 등) ①.....
.....민간투자업무
.....민간투자업무.....
..